

의정정보 2012-7호

1. 최근 제·개정 법령	3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9
3.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89
4. 행복한 책읽기	131

모 두 보 기

최근 제·개정 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
-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의 규칙(7)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11)
-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12)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14)
- 한국 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15)
- 선박관리 산업 발전법 시행령(17)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지원 조례(2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28)
- 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35)
-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39)
-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47)
-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55)
- 대전광역시 경로당 지원조례(60)
-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지원 조례(64)
-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조례(71)
-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조례(77)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 '99지방공기업 경영실적 대폭개선(91)
- 1948년 런던올림픽, 고난과 감동의 순간(94)
- 6월 전력판매량 전년 동월대비 증가(99)
- 최근 폴란드 경제성장의 주요요인(102)
-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50대 여성이 최고(105)
-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발령(111)
- 잠 못 드는 밤 「불면증」 환자가 늘고 있다(113)
- 해외여행 중 감염주의(119)
- 「게임시간 선택제」 본격가동(122)
- 2012런던올림픽 문화축제 「오색찬란(All Eyes on Korea)」 (127)

행복한 책임기.....○ 왕의 경영(131)

최근 제·개정 법령

최근 제·개정 법령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2.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의 규칙	7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11
5.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	12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4
7. 한국 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15
8. 선박관리 산업 발전법 시행령	17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2012.6.22, 시행 2012.7.1]

1. 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은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으로 정하는 등 도시농업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취소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시농업의 유형 세분화(안 제2조)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은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으로 정하는 등 도시농업의 유형을 세분화함.
- 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및 별표 1)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계획 및 운영계획, 도시농업실습시설 및 체험시설의 보유현황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정 및 취소 절차를 정함.
-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및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양성계획, 전문강사요원 보유현황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정 및 취소 절차를 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 2012.6.27, 시행 2012.8.5]

1. 제정이유

「입양특례법」의 시행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입양 및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사건의 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입양허가 청구사건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입양허가 청구사건에 대한 양육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소의 상대방을 규정함(제5조)
- 파양청구에 대하여 기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입양허가사건에 대한 심판의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입양을 허가하는 사건의 즉시항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사항을 규정함(제9조)
- 입양기관 등에 대한 통지사항을 규정함(제10조)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2012.7.1, 시행 2012.7.1]

1.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기준 및 교육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안 제2조 및 별표 1)

- 일상적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나 출·퇴근, 휴가 등 직무와 관련된 부수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일상적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함.

나.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기준(안 제9조부터 제30조까지)

-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국가유공자와 공헌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에 규정된 중상이부가수당, 부양가족수당, 간호수당 등을 비롯한 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그 수당의 지급기준·지급액은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함.

다.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수업료 등의 면제·절차 등(안 제 31조부터 제41조까지)

-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같은 수준의 학교 수업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도록 하며,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입학결정,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을 정함.

라. 취업지원 횟수 및 국가기관의 우선 채용 비율 등(안 제42조부터 제59조까지)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3회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퇴직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간 취업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며,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기능직공무원 등의 채용 비율은 다른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기능직공무원 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마. 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비율 및 의료지원의 기준 등(안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 대한 진료는 응급진료, 입원진료 및 통원진료로 구분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2)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안 제68조부터 제80조까지)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대부금의 이율은 대부 재원의 자금별로 연이율 2퍼센트부터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농토구입대부는 3년 거치 후 12년, 사업대부는 10년, 생활안정대부는 5년으로 정함.

사.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의 발급(안 제86조)

- 보훈보상대상자나 선순위 유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람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1인당 연간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신고 경합 시 포상금 지급방법과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공포 2012.7.17, 시행 2012.7.18]

1. 제정이유

국민의 이해와 참여 증진을 통해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및 방법,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주기(안 제2조)

- 통상조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는 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이 조약의 경제적 효과와 조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

다. 비밀엄수서약의 방식(안 제6조 및 별지 서식)

-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비밀엄수서약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

[공포 2012.7.13, 시행 2012.7.13]

1. 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공포(2011. 9. 3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및 제3조)

- 3년 주기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그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을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

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안 제4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30일 내에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법적근거·목적 등을 관보 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다.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안 제5조)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내에 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 및 목적 등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하도록 함.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등(안 제6조 및 제7조)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 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통지서로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함.

마.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등 요구 등(안 제8조 및 제9조)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등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개인정보 존재확인·열람·삭제 통지서로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함.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안 제11조 및 제12조)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등의 운용 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등으로 함.
- 영향평가 결과(제출받은 영향평가서 및 그 영향평가서에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사. 헌법재판소지침의 수립(안 제13조)

-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공포 2012.7.17, 시행 2012.7.18]

1. 제정이유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발기인의 자격, 설립허가의 절차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 자격(안 제2조)

-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허가(안 제7조)

- 소상공인연합회의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연합회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함.

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의 공개(안 제8조)

-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의 정관·규약, 이사회 이사록 등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고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공포 2012.6.29, 시행 2012.7.1]

1. 제정이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의 제정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립됨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등기절차, 출연금의 지급·관리·사용,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절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 등의 겸직 내용 및 보수, 세입세출 결산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등기절차 마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자산의 총액 등을 설립등기 사항으로 정함.
-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2주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설립등기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출연금의 결정 및 집행절차 마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요구가 타당한 경우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며,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보하도록 함.

-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소속 직원의 인건비, 연구비 또는 개발비 등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며, 그 분기별 집행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결산 절차 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감사보고서 및 회계검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의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 등의 겸직 절차 마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은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겸직기관에서의 신분과 겸직기간, 겸직기관에서의 근무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과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의 총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직원인 겸직교원이나 국립대학의 교육공무원인 겸직연구원이 해양과학기술원의 정관 또는 관련 대학의 학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2012.6.29, 시행 2012.7.1]

1. 제정이유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범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 구체화(안 제2조)
-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중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및 추진계획,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수급·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나.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 및 제5조)
- 1)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 한국선주협회의 장,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 2)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구체화(안 제7조)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는 인증신청의 접수 및 인증심사 업무 외에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연구,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조사 및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인증심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도록 함.

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안 제10조)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자료의 관리, 선박관리산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지도,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타 사·도 제·개정 조례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지원 조례 21
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8
3. 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 35
4.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39
5.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47
6.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55
7. 대전광역시 경로당 지원조례 60
8.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지원 조례 64
9.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조례 71
10.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조례 77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지원 조례

1.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다문화교육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별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3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조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4.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1.10.5] [법률 제10534호, 2011.4.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 [시행일 : 2012.8.2] 제3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11.1.24] [법률 제10374호, 2010.7.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시행 2008.9.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호, 2008.7.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에 의한 연구학교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제3조 (종류)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30>

1.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 삭제 <2008.7.30>
3. 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제4조 (지정 등) ① 삭제 <2008.7.30>

②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③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④연구학교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8.7.30>

제6조 (교원의 배치) 교육감은 연구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원을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비의 지원) 교육감은 연구에 필요한 교재·교구·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상설 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제8조 (연구비 등의 지원) 연구학교의 장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에게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1. 제안이유

-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기관 및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이념 및 방향(안 제4조)
-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5조)
- 다. 교육지원계획 수립(안 제6조)
- 라.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안 제7조)
-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별첨)

- 「청소년기본법」 제8조
- 「청소년보호법」 제5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조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으로써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개인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모두를 포함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성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이념 및 방향)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도와 함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한다.

② 교육감은 시장과 협의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수립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시행계획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 방안
3. 후견인제 등 교육적 지원방안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 교육감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교육감은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등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청, 광주지방경찰청,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기본법」

[시행 2012.2.1] [법률 제11289호, 2012.2.1, 일부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 「청소년보호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2010.5.17] [법률 제10297호, 2010.5.17, 일부개정]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 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설치된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은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청소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선도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결과를 분석하여 선

도의 종료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도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선정절차·선도내용·선도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84호, 2012.3.21,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교육청 및 특별자치시 교육감에 관한 부분

3] 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

1. 제안이유

- 에너지 절감 등으로 경제성이 높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협력망 구축을 위해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다. 지역우수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별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보급 현황 및 신규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3.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4.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교육청 LED 조명 보급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협의체) 교육감은 LED조명 보급촉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생산자·전문가·환경·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역 생산제품의 구매) 지역우수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ED조명을 교체할 때에는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홍보활동)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과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1.10.26] [법률 제10954호]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⑤ (생략)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11.10.26] [대통령령 제23260호]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3]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개정으로 주택에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하도록 시·도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자력 설치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우선설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 주택에서의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주택화재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소방시설 설치 근거 및 목적(안 제1조)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목적 : 주택에서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방지

나. 소방시설 우선 지원 주택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안 제3조)

- 우선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타 시장 구청장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다. 주택의 허가·신고시 소방시설 설치 지도 및 안내(안 제4조)

- 시장 또는 구청장 : 신축 또는 개축의 허가 또는 신고시

라.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류(안 제5조)

○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소형 소화기 1대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세대별 구획된 실마다 설치

마. 기존주택은 '17. 2. 4까지 설치('17.2.5부터 적용,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관실과 합의 되었음(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건축주택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12. 4. 24. ~ '12 . 5.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에 대하여 제5조의 소방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주택
3. 시장·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시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 또는 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또는 개축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2017. 2. 5부터 적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주택용 소방시설을 시책에 의해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주택
- 시장이 시책에 의해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소요 발생 (안 제2조 및 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정(안)의 시행일을 2012. 7월로 하여 추계기간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으로 함
- 소화기는 가구당 1대(능력단위 2단위 수동식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구당 2개 보급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17,729가구 이지만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계획에 따라 기 보급한('12 보급예정 포함) 5,515가구를 제외한 12,214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세출예산은 중기 소비자물가상승률 감안,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였음

나.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한 가구당 기초소방시설(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2개) 2종 3점을 보급 지원하면 총 12,214 가구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902,858천원 비용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연도별 보급·지원 가구수

구 분	1차년도 (2013)	2차년도 (2014)	3차년도 (2015)	4차년도 (2016)	계
보 급 가 구 수(계)	3,058	3,052	3,052	3,052	12,2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569	2,566	2,566	2,566	10,267
한부모 가정 주택	489	486	486	486	1,947

□ 기초 소방시설 설치 소요 금액 : 902,85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가구수	기 보급한 대상 (‘12보급예정 포함)	소요대상	소요금액(천원)
소 화 기 및 단독경보감지기	17,729	5,515	12,214	902,858

【참 고】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요 가구

구 분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광산구	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3,113	2,418	3,868	4,072	2,311	15,782
한부모 가정 주택	150	542	345	610	300	1,947
소 계 (A)	3,263	2,960	4,213	4,682	2,611	17,729

소방시설 기 보급한 대 상 (B)	1,055	1,262	734	1,303	1,161	5,515
설 치 지 원 대 상 (A) - (B)	2,208	1,698	3,479	3,379	1,450	12,214

다. 재원조달방안

□ 연도별 총 소요금액 : 902,858천원

구 분	계(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902,858	225,716	225,714	225,714	225,714
국 고 (50%)	451,429	112,858	112,857	112,857	112,857
시 비 (50%)	451,429	112,858	112,857	112,857	112,857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	2차년도 (2014)	3차년도 (2015)	4차년도 (2016)	계
세 출(a)	225,716	225,714	225,714	225,714	902,858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189,736	189,812	189,812	189,812	759,172
한부모 가정 주택	35,980	35,902	35,902	35,902	143,686

세 입(b)		112,858	112,857	112,857	112,857	451,429
국고 보조금		112,858	112,857	112,857	112,857	451,429
총비용(a-b)		112,858	112,857	112,857	112,857	451,429
재 원 조 달		225,716	225,714	225,714	225,714	902,858
의존재원	시 비	112,858	112,857	112,857	112,857	451,429
	국고보조	112,858	112,857	112,857	112,857	451,429

※ 중기소비자 물가전망 적용 : 2013년 2.9% / 2014년 2.8%

-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0.5 P71

【참 고】 기초소방시설 소요비용 산출근거 : 1 가구당 소요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가구당 보급개수	가구당 소요비용
소 화 기	대	1	20
단독경보형 감지기	개	2	50
계		3	70

3. 작성자 : 소방안전본부 대응구조과장 조승혁

관 계 법 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11037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3]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1. 제안이유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역차원에서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흥·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 환경교육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환경교육에 관한 심의를 위해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마.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사업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바.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사. 환경교육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계상

다. 합의사항 : 환경정책과와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2. 5. 7. ~ 5. 14.

(2) 신·구조문 대비표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
3.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환경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7.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8.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③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전광역시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 ①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제1항의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현장환경교육의 활성화
5.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사회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 지원) ①시장은 사업자가 종사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종사자의 업무 관련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육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환경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 환경교육 기관,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 2008. 9.22] [법률 제8949호, 2008. 3.21,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6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략)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제2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생략)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와 지도를 위하여 대안학교를 육성하고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
2. 보호 및 교육지원 방향 및 추진 목표
3.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담 및 사회적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안교육지원 및 상담사업)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해 대안교육지원 및 전문적인 상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센터를 설립하거나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청소년보호단체 또는 대안교육지원 관련기관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청소년보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구축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3]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 조례

1. 제안이유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경로당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사. 법규 등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사항 : 저출산고령사회과와 합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2. 5. 7. ~ 5. 14.
 - (2) 신·구조문 대비표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신고 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시장은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 및 운용
 2.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
 3.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시설 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비

3.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4.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시행 2012.2.5] [법률 제11013호, 2011.8.4, 타법개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지원 조례

1. 제정이유

- 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암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경기지역암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나. 도내 암환자의 생존율 및 암 생존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정서·신체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암 통합 지지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지역암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암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암관리법 제 19조에 의하여 지정된 ‘경기지역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 지역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지역암관리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 6조)
- 라.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고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있음(별도 추후 산정)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 제3조에 따라 암을 예방하고 암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암검진을 통하여 암진단을 받은 사람,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
2.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란 암 생존자에게 필요한 사회·정서·신체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암 생존자의 재발방지·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암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지역암관리계획(이하 “암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 관리 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암 관리 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암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기지역암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암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경기지역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지역암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암관리계획,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
2.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암관리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7조(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운동·영양 등 일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2. 정보제공·교육·조기진단·상담 등 재발 방지 지원
3. 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유관기관 연계 등 치료 후 지속적 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 생존자 관련 사업추진 등
- ③ 도지사는 통합서비스를 추진할 전문기관을 따로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통합서비스 제공 총괄기관 기능을 수행한다.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의하여 통합서비스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암 생존자 관리에 적합한 기관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지정 전문기관에서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암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완화의료의 대상자)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이하 "완화의료"라 한다)의 대상자는 말기암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완화의료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제22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육성 및 완화의료 전문 인력의 양성
3.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이하 "완화의료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완화의료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료인의 설명의무) 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사는 완화의료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말기암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말기암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완화의료의 신청) ①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말기암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민법」상 성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③ 말기암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완화의료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4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암 진료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의 암생존자 관리
4. 지역사회의 암환자에 대한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3]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2009. 1월 마이스산업이 정부에서 지정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나 국내 마이스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우리 도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안 제3조)
- 나. 5년마다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안 제4조)
- 다.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등의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협력(안 제5조)
- 라.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지원 협의회」 설치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5. 관련기관 의견 : 없음

6. 예 산 상 황 : 의원입법 조례안으로 비용 추계서 생략

7. 기타 참고사항 : 없음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전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 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Exhibition)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 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국제회의 유치 및 전시산업의 촉진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이스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나 유관기관인 한국관광공사,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도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전시시설 및 전담 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정책국장, 경제산업국장, 관광문화국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⑨ 협의회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⑩ 그 밖에 협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시산업발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 ③ 도지사는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그 관할하에 있는 사학의 진흥을 위하여 사립학교에 재정보조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재정보조 대상기관(안 제3조)

- 사립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재정보조 대상사업(안 제4조)

- 재정결함보조를 위한 사업(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수업료 자율화학교 및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이상인 학교는 제외)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보조지침 통지(안 제6조)

- 교육감은 재정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보조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라. 보조금의 신청 등(안 제7조)

-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가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보조사업은 예외

- 교육감은 신청받은 보조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마. 보조금 교부결정시 검토사항(안 제8조)

-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금액 산정의 정확 여부
-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 그 밖에 보조지침과의 적합 여부

바.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안 제10조)

-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을 부가할 경우 교부신청자에게 조건이 기재된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함.
- 교부결정 통지한 보조대상사업의 내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사. 자금의 교부(안 제11조)

- 보조금의 자금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에 따라 교부하며, 시설사업비는 실제 집행요인이 발생하는 시기에 교부함.

아. 목적보조 외 사용금지(안 제12조)

-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법령·조례·규칙 및 보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안 제13조)

- 기 교부결정한 보조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보조사업 기간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보조사업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으로 드러난 때 등

차. 보조금의 반환 등(안 제15조)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함.
- 학교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하게 집행을 한 사실이 있는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중단 등의 제재조치 할 수 있음.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 제5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교육규제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라. 부패 영향 평가 심의

- 검토결과 : 개선권고(관련 : 감사담당관-3120, 2012. 5. 9.)
- 조치할 사항 : 조례안 중 특혜발생 및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조항(제10조 및 제16조)에 대하여 재정보조에 따른 보조의 대상, 규모,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 규정과 불법·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 조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요구됨.
- 조치한 사항(관련조항 보완) : 보조대상사업 내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보조대상기관에 대한 제제조치 조항 추가함.

마. 성별 영향 분석 평가

- 평가결과 : 제외대상(관련 : 체육건강과-7003, 2012. 5. 8.)
- 근거조항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바. 입법예고 결과(기간 : 2012. 4.18.~2012. 5. 8. 20일간)

- 조례명 일부 변경(의견수렴 결과)
 - 당초 :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변경 :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재정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함보조금"이라 함은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인건비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부담금(이하 "법정부담금"이라 한다) 및 사립학교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법정부담금 수요액과 교육감이 정하는 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 및 사립학교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의 전입금(이하 "전입금"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수입금 등 교육감이 정하는 일체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입금 중 법정부담금을 초과하는 전입금과 특수목적 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제외할 수 있다.

제3조(보조대상기관) ①교육감이 행하는 재정보조(이하 "보조"라 한다)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립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 제55조에 따른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교육감이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재정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기관으로 본다.

제4조(보조사업) ①교육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한다.

1. 재정결함보조를 위한 사업

2.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재정결함보조를 위한 사업은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한다. 다만, 수업료 자율화학교 및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이상인 학교는 제외한다.

제5조(보조기준) ①재정결함보조금의 보조기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보조한다.

②제1항 외의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보조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지침) 교육감은 매년 재정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보조지침(이하 "보조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보조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보조사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보조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은 사립 학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정확 여부
4.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5. 그 밖에 보조지침과의 적합 여부

제9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9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조건이 기재된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 통지한 보조대상사업의 내역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1조(자금의 교부) ①보조금의 자금은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에 따라 교부한다.

②시설사업비는 실제 집행요인이 발생하는 시기에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제12조(보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결정 통지한 보조금을 보조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등)

①교육감은 제10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 교부결정한 보조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보조사업 기간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보조사업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으로 드러난 때 등

②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유로 인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대상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재원별 내역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4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내용 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기 교부된 보조금이 정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학교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하게 집행을 사실이 있는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의 중단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수반 요인(관련조문)

-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제26조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사립학교에 보조하고 있는 보조금은 「경상북도 교육, 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 보조하고 있음.(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보통 교부금)

4. 작성자

- 학교지원과 행정6급 안길운(053-603-3722)

관 계 법 령

□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		학교지원과
입 안 자	담당관·과장 직 위 성 명	학교지원과장 지방서기관 김 태 원
	담 당 직 위 성 명	사학지원담당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 동 구
	담 당 자 성 명 전 화	지방교육행정주사 안 길 운 (053-603-3722)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최근 중앙정부의 주요 동향

1. '99지방공기업 경영실적 대폭개선	91
2. 1948년 런던올림픽, 고난과 감동의 순간	94
3. 6월 전력판매량 전년 동월대비 증가	99
4. 최근 폴란드 경제성장의 주요요인	102
5.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50대 여성이 최고	105
6.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발령	111
7. 잠 못 드는 밤 「불면증」 환자가 늘고 있다	113
8. 해외여행 중 감염주의	119
9. 「게임시간 선택제」 본격가동	122
10. 2012런던올림픽 문화축제 「오색찬란[All Eyes on Korea)」	127

1 '99지방공기업 경영실적 대폭 개선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지분의 50%이상을 출자한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 총 252개 지방공기업의 '99년도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본증가와 부채비율감소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증가』 등으로 경영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공기업의 총자산(자본+부채)규모는 전년보다 3% 증가한 46조 1,961억원으로

○ 총자본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25조 7,147억원, 총 부채는 1.9% 감소한 20조 4,813억원이며

○ 자본은 증가하면서 부채는 줄어들고 있어 부채비율이 해마다 줄어드는 등 재무구조가 안정되어 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도별 부채비율

$$\frac{'96년}{94.9\%} \Rightarrow \frac{'97}{110.6} \Rightarrow \frac{'98}{87.0} \Rightarrow \frac{'99}{79.6}$$

- 특히 자치단체에서 건설할 때 발행한 부채를 공사에서 인수한 지하철사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59.8%로 국내 제조업 평균부채비율 214.7%와 정부투자기관의 부채비율 132.3%와 비교할 때 매우 건전한 편이다.

◇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규모도

○ 지하철공사를 제외할 경우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98년도 3,750억원 보다 무려 45.7% 증가한 5,464억원의 흑자를 실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 추세

(단위 : 억원)

구 분		당기순이익	
		1998년	1999년
계 (지하철제외)		3,750	5,464
계 (지하철포함)		△3,201	△959
직영기업		3,556	5,116
공사· 공단	계 (지하철제외)	189	348
	계 (지하철포함)	△6,757	△6,075
	지하철	△6,951	△6,423

○ 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은 '98년도 3,556억원에 비하여 43.8%(1,560억원)증가한 5,11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 지하철사업을 제외한 의료원·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공단은 '98년도 194억원에 비하여 79.4%(154억원)증가한 348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지하철사업의 경우에는 과도한 건설부채 인수로 인한 원리금상환과 국민경제적 이유로 인한 요금현실화의 미흡 등으로 6,42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98년 6,951억원의 적자에 비해 528억원(7.6%)이 감소된 것이다.

○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는 『낮은 요금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인 상황을 감안할 때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인 바,

- 이러한 결과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6,604명의 인력 감축과 14개 법인 통폐합 등 강력한 경영혁신조치

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데다, 경영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율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었고,

- 법인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경영효율성 개념을 과감히 도입하여 비용을 최소화시킨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러나, 요금현실화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공기업의 경우

- 요금수준이 낮아 생산원가에 못 미치고 있어 요금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 및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상수도 : 생산원가 535.3원, 판매단가 394.5원(73.7%)
- 하수도 : 생산원가 275.7원, 판매단가 130.6원(47.4%)
- 지하철 : 수송원가 628원, 평균요금 363원(57.8%)

◇ 행정자치부에서는 '99經營實績 分析結果를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 우수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널리 확산시키고,
-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자체적으로 강구토록 하는 한편,
- 향후 경영진단대상을 선정하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강력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 1948년 런던올림픽, 고난과 감동의 순간!

-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대한민국 올림픽의 역사」 기획전시회 개최 -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송귀근)은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7일간 서울 청계천 광고갤러리에서 ‘기록으로 보는 대한민국 올림픽의 역사’라는 주제로 기획전시회를 개최예정
- ◇ 이번 전시회는 2012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대한민국 올림픽 출전의 역사와 감동의 순간을 기록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전시회에서는 1936년 손기정 선수가 참가한 제11회 베를린올림픽에서부터 2012년 제30회 런던올림픽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문서, 사진, 영상 등 170여 점의 기록물을 전시한다.
 - 특히, 1948년 런던올림픽 참가 당시의 모습을 담은 ‘런던에서 런던으로’ 전시코너에는 우리나라 최초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다양한 기록물을 만나 볼 수 있다.
 - 먼저, 1947년 6월 1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우리나라가 IOC 회원국으로 승인되었다는 ‘IOC 가입 승인 편지(1947.7.18)’를 확인할 수 있다. 편지에는 “대한민국이 런던으로부터 올림픽 참가 초청장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이와 관련하여 1947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IOC 총회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한 이원순(1890~1993)의 여행증명서

(1947)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여행증명서는 당시 미국 한인 이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원순이 IOC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절차에 필요한 신원 및 국적 등을 직접 타이핑해 작성한 것이다.

- 우리나라가 1948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림픽 경비마련이 시급했다. 정부는 올림픽 참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인 ‘국민 후원권’을 발행했다. 전시회에서는 당시에 발행한 ‘제14회 런던올림픽 후원권’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1948년 런던올림픽 참가를 기념해 발행한 ‘기념우표 (1948)’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 선수단은 1948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을 출발하여 일본, 중국, 태국, 인도, 이집트, 네덜란드 등을 거쳐 20여일 만에 힘겹게 런던에 도착했다.
 -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되는 ‘황산웅 선수(사이클)의 여행증명서 (1948.6)에 찍힌 각국의 출입국심사 도장이 당시의 고단한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 당시 여행증명서는 정부수립 이전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미군정청이 발행한 것도 눈에 띈다.
- 또한 1948년 런던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국 선수단의 입촌식과 입장식 장면을 비롯해 단복, 뱃지, 깃발 등도 관람할 수 있다.
 - 당시 선수단이 입었던 단복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용 천으로 만들어 선수들이 땀범벅이 될 정도로 고생했다고 알려진 그 단복이다.

- 이외에도 우리나라 최초 여성 출전선수였던 박봉식 선수(원반던지기)의 활동상과 동메달 리스트 김성집 선수(역도)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관람할 수 있다.
- 전시회에서는 1948년 런던올림픽 이외에도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당시 우리나라 최초 금메달 리스트 양정모(레슬링) 선수의 사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관련 기록이 전시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 송귀근 국가기록원장은 “먼저 이번 전시회를 통해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한다”면서
- “역대 올림픽 기록을 통해 지난 시절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되새기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기록으로 보는 대한민국 올림픽의 역사 기록전」 주요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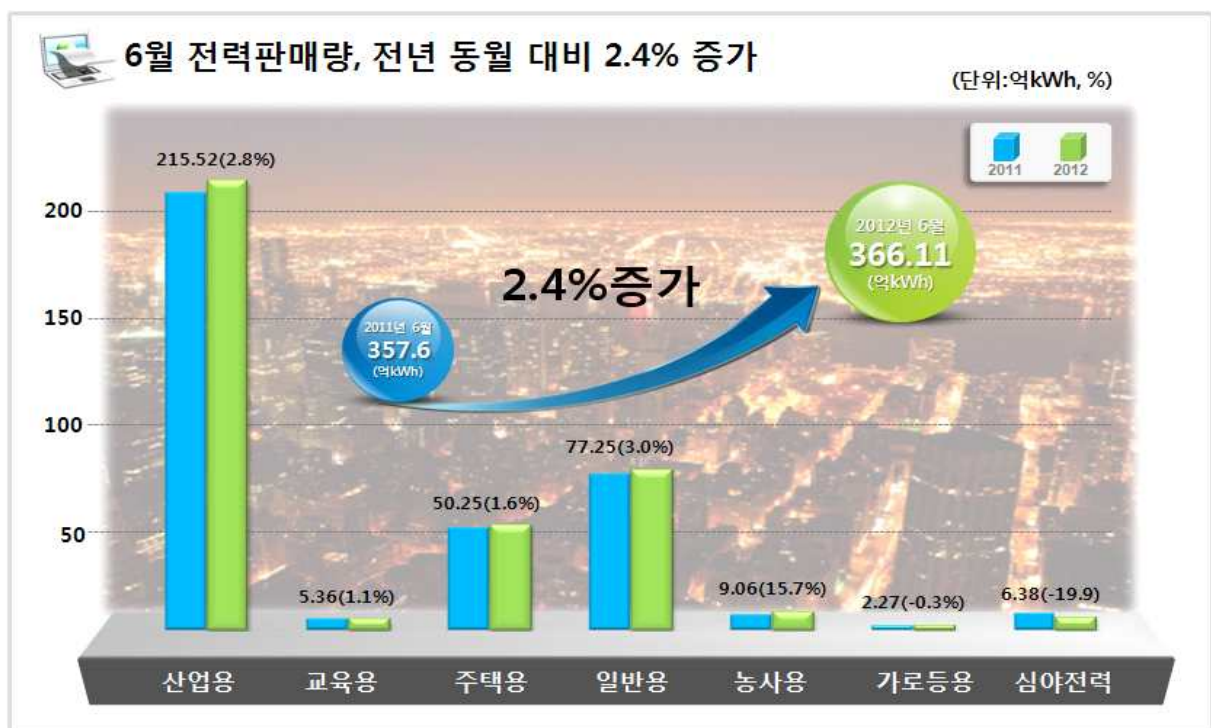
이원순 여행증명서 /1948 1947년 IOC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이원순 한인미민위원회 위원장 여행증명서(문화재청)	제14회 런던올림픽 후원권 /1948 런던올림픽 경비 마련을 위해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 복권 (문화재청)	IOC 가입 문서 /1947 IOC 총회에서 한국을 올림픽에 초청한다는 내용 (독립기념관)
감사장 /1947 조선체육회가 이원순에게 수여 한 감사장 (독립기념관)	제14회 올림픽 조직위원회 발급한 신분증 /1948 한국 선수단 총감독 이병학 신분증 (고려대학교 박물관)	황산웅 여행증명서 / 1948) 사이클 선수로 출전한 황산웅 선수의 여행증명서 (이금혜 _ 황산웅 선생 부인)
제14회 런던올림픽 선수촌 입촌식 / 1948 (독립기념관)	제14회 런던올림픽 선수촌 입촌식 / 1948 (독립기념관)	제14회 런던올림픽 한국 선수단 단체 사진 / 1948 (이금혜 _ 황산웅 선생의 부인)

		
제14회 런던올림픽 주경기장 /1948 1948년 런던 올림픽이 개최된 주경기장 (문화재청)	광복 후 'KOREA'라는 국호로 처음 참가한 제14회 런던올림픽 한국 선수단 개막식 입장 / 1948 (독립기념관)	제14회 런던올림픽 선수단 패너트(삼각기) /1948 (문화재청)
		
제14회 런던올림픽 출전 한국 선수단 단복 /1948 (문화재청)	제14회 런던올림픽 출전 한국선수단 뱃지와 마크 /1948 (독립기념관)	제14회 런던올림픽 축구 예선 한국과 스페인의 경기 /1948 (독립기념관)
		
제14회 런던올림픽 역도 동메달 리스트 김성집 선수 / 1948 (독립기념관)	제14회 런던올림픽 원반던지기 박봉식 선수 / 1948 올림픽 출전 선수 중 홍일점이자 올림픽에 출전한 최초의 여성 선수 (독립기념관)	제14회 런던올림픽 선수단 귀국 환영 인파 / 1948 (독립기념관)

1 6월 전력판매량, 전년 동월대비 증가

- 산업용 2.8% ↑, 주택용 1.6% ↑, 일반용 3.0% ↑, 농사용 15.7% ↑ -

◇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6월 전력판매량은 전년 동월대비 2.4% 증가한 366.1억kWh를 기록



* 전력판매량(한전과 소비자간 소매거래): 6월 검침일 기준으로 실제 전기사용 기간은 고객에 따라 5.2~6.30까지 분산 (용도별 판매량 집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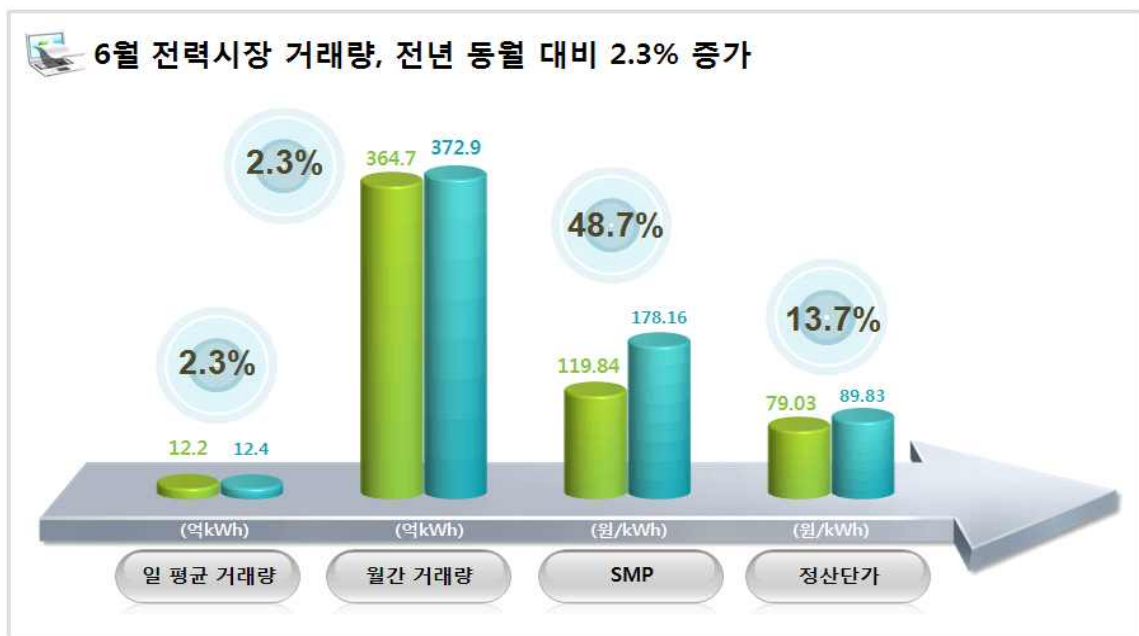
○ 평균기온의 상승(전년동월대비 1.3℃ ↑)에도 불구하고 하계 전기절약 시책추진, 수출증가율 둔화(전년동월대비 1.1% ↑)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월 평균기온(전력수요 예측에 적용된 5대도시): ('11.6월) 19.9℃→ ('12.6월) 2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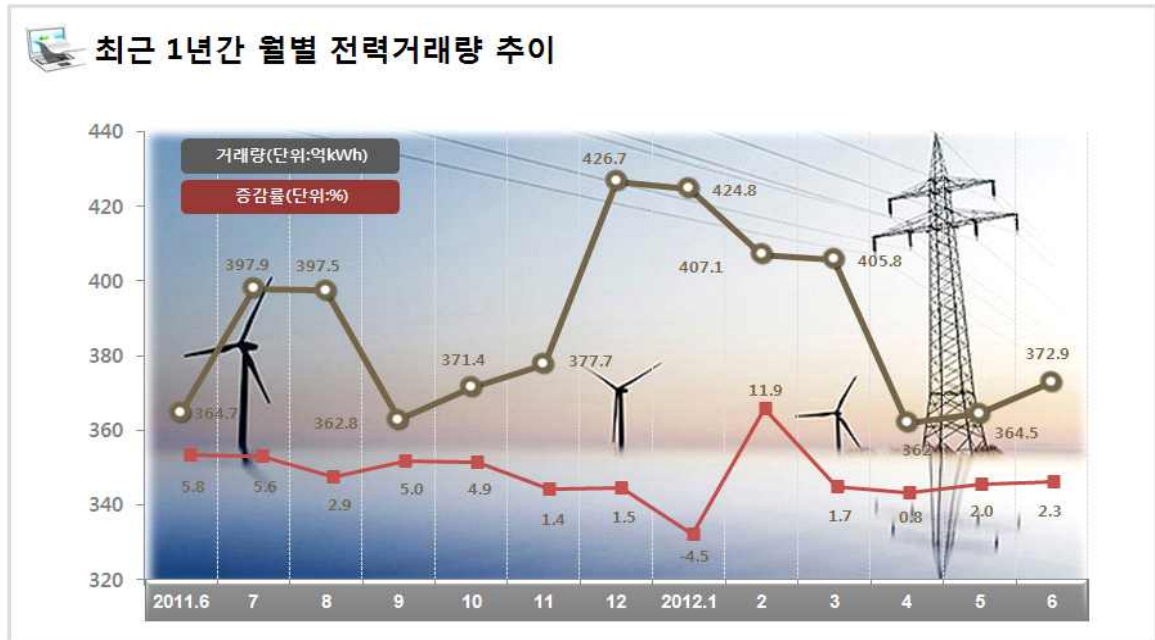
○ 용도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산업용 2.8%, 교육용 1.1%, 주택용 1.6%일반용 3.0%, 농사용 15.7% 증가

◇ 6월 전력시장 거래량은 전년 동월대비 2.3% 증가한 372.9억 kWh를 기록

○ 6월 최대전력수요는 6,739.0만kW(6.29일 15시)로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최대 전력수요 발생 시 전력공급 능력은 7,182.3만kW로 공급예비력(율)은 443.3만kW(6.6%) 유지



* 전력시장 거래량(한전과 발전사간 도매거래): 전력시장 거래일 기준으로 월력(月曆)과 일치



* 증감률(전년동월 대비)

◇ 한편 계통한계가격(SMP)은 전년 동월대비 48.7%(119.8원/kWh→178.2원/kWh), 정산단가는 13.7%(79.0원/kWh→89.8원/kWh) 큰 폭으로 상승

* SMP는 한전이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평균 구매단가, 정산단가는 한전이 전력시장(발전자회사+민간발전사)에 지급하는 평균 구매단가

* 최근 6개월간 SM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1월(11.8), 2월(29.5), 3월(43.5), 4월(34.6), 5월(45.5), 6월(48.7)

○ 이는 주요 발전연료의 연료비 상승과 높은 가격의 유류발전기가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에 기인

1] 최근 폴란드 경제성장의 주요요인

◇ 폴란드는 중동부유럽국가 중 가장 큰 인구·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성장잠재력도 최고로 평가

* 폴란드는 '04.5월 EU에 가입한 10개 신규회원국 가운데 인구(38백만명)가 가장 크고 경제규모도 10개 신규회원국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

○ '89년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 1996년 OECD, 1999년 NATO에 가입하였으며, '04년에는 EU 회원국으로 가입

◇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대부분의 EU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폴란드 경제는 EU 가입 이후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

○ EU 가입 이후 연평균 5%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11년에는 4.4%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 기록하는 등 EU 27개 국가 중 가장 건실한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 경제성장률(IMF, %): ('08)5.1 → ('09)1.6 → ('10)3.9 → ('11)4.4

◇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의 對 EU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EU 국가중 가장 건실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폴란드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對 EU 수출감소 대응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

* 對EU 수출증감률('12.1~4월, %): 한국 △18.5, 중국 △2.0, 일본 △4.6, 미국 6.3

** 對EU 국가별 수출('11년): 독일 95억불, 프랑스 57억불, 영국 50억불, 폴란드 41억불

○ 이에 최근 폴란드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주요인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 및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방향을 검토함

◇ (성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08년에도 5.1% 성장, '11년에는 4.4%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 기록

* 경제성장률(%): ('06)6.2→('07)6.8→('08)5.1→('09)1.6→('10)3.9→('11)4.4

○ 경제 성장세는 '12년에도 이어져 1/4분기 성장률 3.8%를 달성 (폴란드 통계청, '12.5월)

○ 이러한 경제성장세는 튼튼한 내수시장, '유로 2012' 개최 관련 인프라 투자*, 최대교역국 독일의 양호한 경제여건 등이 주요인

* 유로 2012 개최를 위한 도로, 경기장 건설 등에 '08~'12년간 총 854억즈위터를 투자

◇ (고용) 2000년대 초반까지 실업률이 20%에 근접하였으나, '04년 EU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및 수출 증가, 해외취업 증가 등으로 최근에는 10% 이내로 크게 하락

○ '07년 이후 폴란드의 실업률은 10% 이내를 유지

* 실업률(%): ('04)18.9→('07)9.6→('08)7.1→('09)8.2→('10)9.6→('11)9.6

◇ (교역) 즈위티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수출이 증가 추세

* 수출(억달러): ('07)1,388→('08)1,719→('09)1,366→('10)1,598→('11)1,889

○ 에너지·철강 등의 수요 증가로 수입도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적자

* 수입(억달러): ('07)1,642→('08)2,105→('09)1,496→('10)1,781→('11)2,094

수지(억달러): ('07)△254→('08)△386→('09)△130→('10)△183→('11)△205

** 폴란드는 EU 역내교역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과의 교역비중이 수출의 26.1%, 수입의 22.3%를 차지

〈 폴란드 경제의 주요 특징 〉

◇ 폴란드는 중동부유럽 최대의 경제 규모를 보유

* GDP 규모('11, 억불): (폴란드) 5,138 (체코) 2,153 (루마니아) 1,898
(헝가리) 1,413 (슬로바키아) 961

- '11년 중동부유럽(17개국) 전체 GDP의 34%를 차지
- '11년 1인당 GDP(구매력 기준)는 20,334달러로서 중동부 유럽 평균의 1.2배

◇ 경제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존도가 낮은 것이 특징

① (산업구조) 선진국 수준의 높은 서비스업 비중 보유

* 산업별 비중('10년): 서비스업 64%, 제조업 32%, 농업 4%

② (수출구조) 수출의존도가 40% 이내로 비교적 낮은 편

- 수출의 60% 이상이 EU 국가에 집중, 특히 독일 수출비중이 26.1%로 상당히 높은 편

③ (물가수준) 1991~2001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경험

- EU 가입이후 물가상승률이 지속 하락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1~4%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물가상승률(%): ('90)585.8→('95)27.9→('00)10.1→('05)2.1→('09)3.5
→('10)2.5→('11)4.3

④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가 지속 증가하여 '12.5월말 현재 792억 유로로서 사상 최고치

* 외환보유고(억€): ('08년말)441→('09년말)552→('10년말)700→('11년말)757
→('12.5월)792

1]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50대 여성이 최고

◇ 인구 10만명당

- 50대 여성이 398명으로 가장 많아 → 전체 인구 평균 235명 (2011년)
- 최근 5년간 20대 남성 가장 크게 증가 → 연평균 8.8% ↑ (전체 평균 3.5% ↑)
 - 특히, '비(非)직장인' 20대 남성, 연평균 10.2% ↑
- 40대~50대 남성 직장인이 비(非)직장인 보다 스트레스 많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신 및 행동장애의 한 유형인 '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장애(F43, 이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환자가 2007년 9만8,083명에서 2011년 11만5,942명으로 늘어났다.

[스트레스(F43)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 환자수]

(단위 : 명, %)

성 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체	98,083	101,024	109,027	114,817	115,942
남 성	36,626	38,041	41,434	44,194	45,568
여 성	61,457	62,983	67,593	70,623	70,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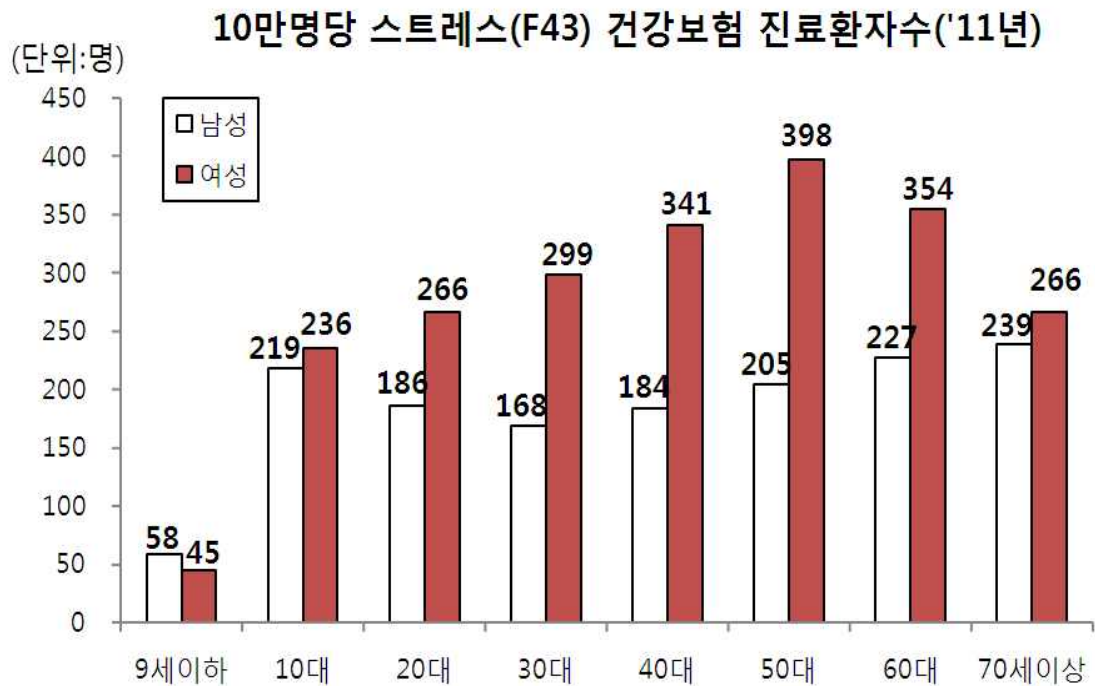
- 2011년 기준, 진료환자는 남성이 4만5,568명, 여성이 7만 374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가량 많았고, 연령 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2만2,430명과 2만1,903명으로 전체 진료환자(11만5,942명)의 38.2%를 차지하였다.

[2011년 스트레스(F43) 성별/연령대별 건강보험 진료환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9세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전체	115,942	2,373	14,434	15,193	19,153	22,430	21,903	11,768	8,688
남성	45,568	1,379	7,339	6,562	7,152	8,100	7,438	4,406	3,192
여성	70,374	994	7,095	8,631	12,001	14,330	14,465	7,362	5,496

- 2011년 기준,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50대 여성이 3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대 여성 354명, 40대 여성 341명 순(順)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동안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 남자로 연평균 8.8% 증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70세 이상 남자가 8.0%, 70세 이상 여자가 7.9% 증가하였다.

[인구 10만명당,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8.8	4.2	2.0	4.1	7.8	8.0
여성	2.4	-0.1	-0.5	4.7	6.6	7.9

◇ 경제활동연령을 고려하여 20~60대 진료환자를 ‘직장인’과 ‘비(非)직장인’으로 구분해 분석해 본 결과

○ 201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는 여성 비직장인 360명 > 여성 직장인 278명 > 남성 비직장인 206명 > 남성 직장인 181명 순(順)으로 나타나 ‘비(非)직장인’이 ‘직장인’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진료환자수가 더 많았다.

- 그러나, 40대와 50대 남성은 ‘직장인’이 각각 197명, 228명으로 ‘비(非)직장인’ 177명, 196명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연령대별 진료환자수('11년)]

(단위 : 명, 배)

구분	직장인(A)			비(非)직장인(B)			비율(A/B)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17	181	278	293	206	360	0.7	0.9	0.8
20대	171	121	221	265	227	310	0.6	0.5	0.7
30대	193	158	259	279	196	330	0.7	0.8	0.8
40대	233	197	301	289	177	365	0.8	1.1	0.8
50대	271	228	363	324	196	414	0.8	1.2	0.9
60대	247	222	319	307	236	361	0.8	0.9	0.9

- 최근 5년동안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비(非)직장인’은 성별에 따라 남성은 20대, 여성은 60대였다.

[인구 10만명당, ‘비(非)직장인’의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	10.2	7.2	3.5	4.4	8.4
여성	3.3	1.0	0.4	5.2	6.9

- ◇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147억원에서 2011년 208억원으로 1.4배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2011년 급여비는 139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스트레스질환(F43) 진료비/급여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4,668	15,932	17,919	20,074	20,787	10,031	10,764	12,016	13,408	13,882
입원	3,150	3,192	3,281	3,565	3,572	2,464	2,400	2,478	2,699	2,713
외래	10,080	11,012	12,610	14,246	14,776	6,551	7,147	8,105	9,106	9,440
약국	1,438	1,728	2,028	2,263	2,439	1,016	1,217	1,433	1,603	1,729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수희 교수는 ‘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장애(F43)’의 정의, 원인, 해소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장애’란?

- 스트레스 상황 및 주요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건강의학적 증상증후군으로 진단을 위해서는 본 진단의 원인이 되거나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관 사건이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

○ ‘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장애’의 원인

- 진료환자수가 가장 많았던 50대 여성은 폐경기를 경험하면서 우울감, 불안, 초조감, 불면 및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정신신경장애가 흔하게 발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최근 5년동안('07년~'11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20대 남성은 전보다 엄격한 수준의 능력을 요하는 사회적 압박 및 개인의 기대, 좌절 등과 같은 정신심리적 요인에 보다 쉽게 영향을 받아 정신건강의학적 질병의 발현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혼자 거주하게 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지지 체계의 결여,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우울장애의 연관 인자에 노출된 7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여 정신건강의학적 진료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40대와 50대 남성에서 ‘직장인’은 ‘비직장인’에 비해 지시에 의 복종, 대인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 및 소음, 강력한 빛과 열, 한정된 공간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관련되어 스트레스의 외적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연관 사건을 보다 빈번하게 경험하면서 질병의 발현에 보다 취약하다.

○ ‘스트레스’ 해소법

- 성취 지향적이고 강박적이며, 완벽주의자에 일 벌레인 사람은 같은 스트레스 사건 하에서도 생활의 균형과 편안한 마음의 여유를 즐기는 성격보다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먼저 이해하고, 스트레스의 내적 요인에 집중하여 자기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 가장 쉽고 빠른 스트레스 해소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카페인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다. 카페인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강력한 자극제로, 불안, 초조, 불면 및 근육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② 일주일에 3차례 이상, 30분 동안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는 각성이 증가되어 있는 고에너지 상태이므로 운동을 통해 신체 내부의 과도한 에너지를 외부로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③ 하루 1~2 차례, 20분 동안의 이완과 명상이 도움이 된다. 이완 방법은 스트레스와 반대되는 중화작용으로 진정 효과를 나타낸다. 의지적으로 맥박을 느리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호흡 횟수를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스트레스 반응의 효과를 반전시킬 수 있다.

1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발령

-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전체 모기밀도의 50%이상, 모기 안물리게 주의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는 올해 처음으로 매개모기 감시 지역(39개 조사지역) 중 1개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모기의 50% 이상 분류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

※ 금년 일본뇌염 주의보는 4월 25일 발령

○ 이번에 채집된 모기는 부산지역에서 7.16일 저녁~7.18일 새벽 채집한 모기로 총 채집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7% 분류되었으며, 현재 바이러스검사 진행중이다.

○ 모든 모기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일부 뇌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이나, 일부에서 뇌염으로 진행해 고열, 두통, 복통 및 경련, 혼수, 의식장애 등의 신경과적 증상이 나타남

○ 질병관리본부는 부산 이외 38개 조사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밀도가 아직 50% 미만이며,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39개 조사지역에서 공동으로 일본뇌염유행예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 결과에 따라 지난 4월말 일본뇌염 주의보(4.25)를 발령한 바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7~10월 하순까지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며, 불가피한 야외활동 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긴 팔, 긴 바지 옷 착용 등)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만 12세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추어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했다(총 5회 접종).
- 특히,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기초접종 3회 후에 받는 4, 5차 추가접종률이 매우 낮은 편으로,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하여 만 6세와 만 12세에 받는 일본뇌염 추가예방접종 철저에 보호자, 보육시설 및 학교선생님 등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1 잠 못 드는 밤 『불면증』 환자가 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불면증(F51.0, G47.0)’에 대해 분석한 결과,

- 진료인원은 2007년 20만7천명에서 2011년 38만3천명으로 5년간 약 17만6천명이 증가(84.6%)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6.7%로 나타났으며,
- 총진료비는 2007년 107억원에서 2011년 229억원으로 5년간 약 122억원이 증가(112.9%)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0.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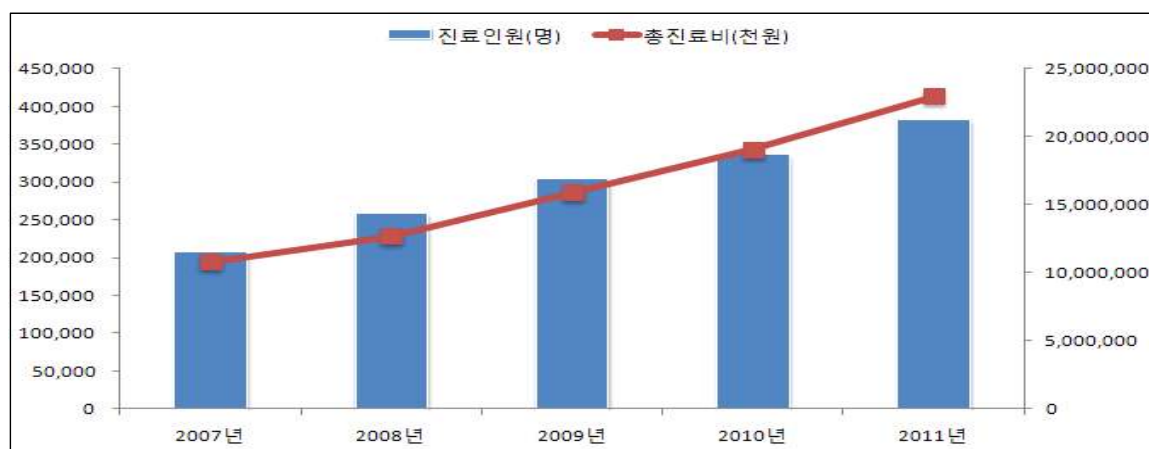


그림1. <불면증>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 추이(2007~2011년)

표1. <불면증> 진료인원 및 진료비 현황(2007~2011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진료인원 (명)	계	207,559	258,703	305,029	336,753
	남	76,858	94,199	113,203	125,319
	여	130,701	164,504	191,826	211,434
총진료비 (천원)	계	10,798,687	12,710,705	15,925,327	19,089,349
	남	4,346,619	5,061,780	6,403,433	7,597,601
	여	6,452,068	7,648,925	9,521,894	11,491,748

- ◇ 불면증 진료인원은 남성이 매년 약 36.4% ~ 37.7%, 여성이 약 62.3% ~ 63.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에 비해 약 1.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기준 1.7배)

표2. <불면증> 진료인원 성별 점유율 및 증감률(2007~2011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성비(남성대비여성)		1.7	1.7	1.7	1.7	1.7	-
점유율	남	37.0%	36.4%	37.1%	37.2%	37.7%	-
	여	63.0%	63.6%	62.9%	62.8%	62.3%	-
전년대비 증감률	계	-	24.6%	17.9%	10.4%	13.8%	16.7%
	남	-	22.6%	20.2%	10.7%	15.2%	17.2%
	여	-	25.9%	16.6%	10.2%	12.9%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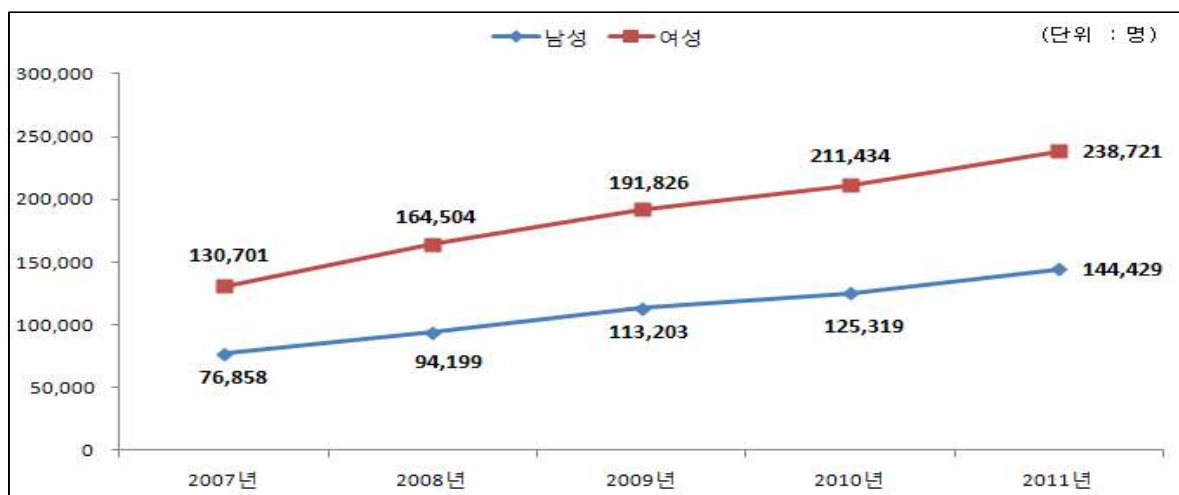


그림2. <불면증> 성별 진료인원 추이(2007~2011년)

-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여성은 육아,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나이가 들에 따라 남성보다 현저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커잡 못 이루는 경우가 많다.

- 반면, 남성들은 불면증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자기 치료적으로 음주로 대처, 만취를 숙면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과음하는 동안 감각과 지각 능력이 떨어져 불면증이 있어도 이를 감지하지 못해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적다.

◇ 불면증 진료인원을 연령별(10세구간)로 분석한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70세이상 고연령층의 점유율이 26.5%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20.5%로 그 뒤를 이었다. 50대이상의 점유율은 65.6%로, 불면증 환자 10명중 6~7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 <불면증> 연령별/성별 진료인원 및 점유율(2007~2011년)

구 분		진 료 인 원 (명)					연령별 점유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세 미만	계	2,173	2,673	2,894	2,881	3,078					
	남	1,038	1,222	1,357	1,389	1,489	1.0%	1.0%	0.9%	0.9%	0.8%
	여	1,135	1,451	1,537	1,492	1,589					
20~29세	계	17,277	21,754	24,657	25,046	26,539					
	남	4,769	5,686	6,703	7,138	8,300	8.3%	8.4%	8.1%	7.4%	6.9%
	여	12,508	16,068	17,954	17,908	18,239					
30~39세	계	26,328	31,762	36,042	38,191	42,588					
	남	8,775	10,040	11,511	11,938	13,494	12.7%	12.3%	11.8%	11.3%	11.1%
	여	17,553	21,722	24,531	26,253	29,094					
40~49세	계	38,139	46,084	52,463	54,479	59,453					
	남	13,218	15,405	17,863	18,717	20,684	18.4%	17.8%	17.2%	16.2%	15.5%
	여	24,921	30,679	34,600	35,762	38,769					
50~59세	계	38,341	48,509	57,404	65,833	78,486					
	남	13,435	16,789	20,092	22,745	27,245	18.5%	18.8%	18.8%	19.5%	20.5%
	여	24,906	31,720	37,312	43,088	51,241					
60~69세	계	38,602	48,145	56,778	63,143	71,419					
	남	16,073	20,200	23,802	26,350	29,787	18.6%	18.6%	18.6%	18.8%	18.6%
	여	22,529	27,945	32,976	36,793	41,632					
70세 이상	계	46,699	59,776	74,791	87,180	101,587					
	남	19,550	24,857	31,875	37,042	43,430	22.5%	23.1%	24.5%	25.9%	26.5%
	여	27,149	34,919	42,916	50,138	58,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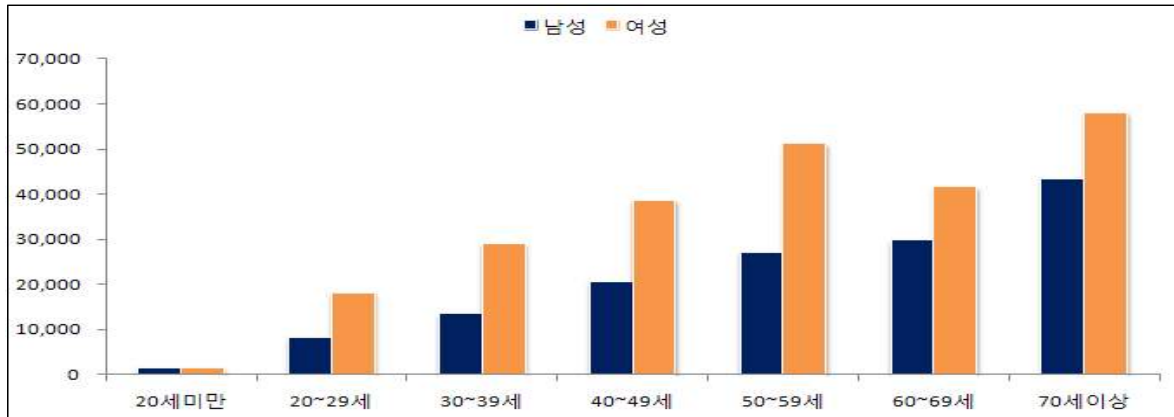


그림3. <불면증> 성 및 연령별 진료인원 추이(2011년 기준)

- 각 연령구간별 성비를 비교해본 결과 20~30대에서 여성 진료 인원이 동연령의 남성 진료인원에 비해 2.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진료인원이 서서히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은 비교적 젊은 20~30대부터 불면증 진료인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표4. <불면증> 연령구간별 성비(2011년 기준)

구 분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성비(남성대비여성)	1.1	2.2	2.2	1.9	1.9	1.4	1.3

- 2007년 대비 2011년 연령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20~40대는 41.6~61.8%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50대이상에서는 85.0~117.5%의 증가율이 나타나, 고연령층에서 불면증 진료인원이 더욱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더불어 수면 요구량도 줄어들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적어져 덜 자게 되는 생리적 적응을 불면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줄어들게 되고 이때 운동과 같은 다른 보완적 활동을 생각해 내지 못한 경우 더욱더 수면 요구가 줄고 불면이 따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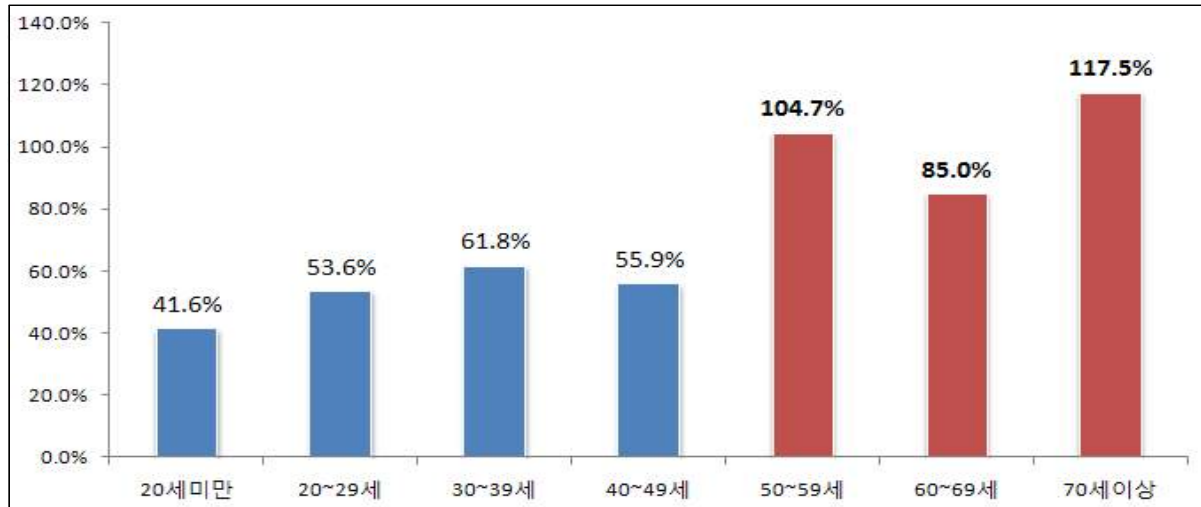


그림4. 〈불면증〉 최근 5년간 연령구간별 증가율(2007년 대비 2011년)

◇ 불면증은 가장 대표적인 수면 장애로, 밤에 잠을 자고 싶으나 잠이 오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크게 신체적 질환 등이 원인인 기질성 불면증(G47.0)과 정신적인 측면이 원인인 비기질성 불면증(F51.0)으로 나뉘며, 원인 질환이 없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루는 비기질성 불면증 환자도 한해 약 17만명(2011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표5. 〈불면증〉 세부 상병별 진료인원 현황(2007~2011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기질성 불면증 (F51.0)	계	97,124	114,178	132,592	144,737	169,263
	남	36,901	43,144	51,252	55,870	65,569
	여	60,223	71,034	81,340	88,867	103,694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G47.0)	계	110,435	144,525	172,437	192,016	213,887
	남	39,957	51,055	61,951	69,449	78,860
	여	70,478	93,470	110,486	122,567	135,027

○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는 정상적인 생활리듬에 악영향을 끼쳐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앓고 있는 내과적, 신경과적,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라면 이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불면증을 앓고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다.

◇ 불면증의 치료방법은 원인에 따라 다르다. 원인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불면증이라면 해당 원인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원인이 없는 불면증의 경우 임상 특성에 따라 수면제, 항우울제 등의 약물이 사용된다.

◇ 불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정상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수면위생”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① 낮잠을 피한다.
-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기상시간은 반드시 정하고, 그 기준에서 2시간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③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담배, 술, 커피 등)을 가급적 피하고, 저녁식사에 과식을 하지 않는다.
- ④ 침실은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다른 일이나 책을 볼 때 침대위에서 보는 것을 피한다.
- ⑤ 잠이 오지 않을 때는無理하게 잠들려 애쓰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는 등 다른 일을 하다가 잠이 오면 다시 잠자리에 든다.
- 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되, 밤 8시 이후로는 삼간다.
- ⑦ 매일 조금이라도 해 빛을 쬐인다. 멜라토닌이 합성되어야 수면에 도움이 된다.
- ⑧ 점점 잠들기가 어려워지므로, 알코올과 수면제 남용을 피한다.

1 해외여행 중 감염주의

- 동남아(수족구), 유럽(홍역), 열대지역(말라리아, Dengue) 주의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최근 중국, 동남아에서 수족구병이 유행중이며 세균성 이질, Dengue, 말라리아 등의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7.20(금) 16:00시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여름휴가와 런던 올림픽(7.27~8.12)기간에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해외여행을 당부하기 위한 해외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09년까지 해외유입 감염병 사례는 200명 내외로 보고되었으나, 2010년 335명, 2011년에 349명으로 2009년 대비 135.8%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해외유입	104	75	108	118	170	140	220	180	148	335	349

○ 2011년에 신고된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은 「세균성 이질, Dengue, 말라리아,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A형간염」 순으로 나타났다,

- 유입 국가는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아시아 지역과 「가나, 카메룬, 케냐 등」의 아프리카 지역이었으며,

- Dengue 및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 감염병은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엔테로바이러스 71(EV-71)형에 의한 중증 수족구병으로 사망자 발생 보고가 있었고, 중국, 베

트남 등에서도 최근까지 수족구병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어린이를 동반하여 이들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동 지역은 AI 인체감염(H5N1)으로 인한 사망자 건도 보고되고 있음

- 또한 올림픽 개최국인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에서는 홍역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미접종자의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시 안전수칙 예방요령을 숙지하고 여행 중 각종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귀국 시 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해외발생 질병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여행국가(지역)의 질병발생 정보와 예방요령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인터넷 검색창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또는 <http://travelinfo.cdc.go.kr>

주요 해외유입감염병 예방 요령

○ 여행 전 준비사항

- 여행 전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에서 목적지 검색, 해당 여행지에 유행하는 각종 질병정보 확인
- 설사약과 해열제 등 구급약과 모기기피제 준비
- 필요시, 예방접종(황열, A형간염) 또는 적절한 예방약(말라리아) 복용

○ 수인성 전염병 예방요령(콜레라,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

- 수시로 손 깨끗이 씻기
- 끓인 음료수 혹은 병, 캔에 든 안전한 음료수 사용
-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고, 과일 등도 직접 껍질을 까서 먹기
- 위생처리가 불결하거나 의심되는 길거리 음식 등은 절대로 먹지 않기
- 해외 장기 체류자나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A형간염 예방접종 (2회)

○ 모기 매개질병 예방요령(뎅기열, 말라리아, 황열, 일본뇌염 등)

- 열대지방을 여행할 때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말라리아 유행지역을 확인 및 예방목적의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되 특히 클로로퀸 내성 지역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 ※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와 상담 후 복용
- 황열, 일본뇌염의 경우 미리 예방접종 받기
 - ※ 황열은 국립중앙의료원, 충남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병원 및 13개 국립 검역소에서 예방접종 가능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곤충 기피제 사용 및 긴 소매, 긴 바지 착용

○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예방요령

- 조류 접촉 및 가금류(닭, 오리) 농장 출입을 자제하기
- 가금류는 가급적 완전히 익혀서 먹기
- 생닭 혹은 오리 등을 다룬 후에는 손과 도구를 반드시 씻기

○ 수족구병 예방요령

- EV71형 등의 장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환자의 코·인구의 분비물(기침이나 재채기), 침, 대변 등과 직접 접촉으로 전파 가능
- 자주 손 씻기 및 외출 후 또는 식사 전 손 깨끗이 씻기
- 음식물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기
- 위생처리가 불결한 음식 먹지 않기
- 과일이나 야채는 씻거나, 껍질을 벗겨서 먹기
 - ※ 봉사활동 등 교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모기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 의한 공수병에 특히 주의
 - ※ 귀국 시 설사 및 발열 증상 등이 있을 경우 검역소에 신고, 귀국 후에는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1] ‘게임시간 선택제’ 본격가동

- 7. 1부터 부모 등 법정대리인 요청으로 청소년 게임시간 -

-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 예방 조치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 ‘게임시간선택제’는 종전에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라고 불렸던 제도인데, ‘셧다운’이라는 단어에서 ‘일방적’이라는 어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지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정한 명칭이다.
 - 문화부는 종전의 일방적인 24시간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 방식이 이용자의 요청 시간에 따라 게임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
 - 게임이용시간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하여 정해진다는 점 등을 이 제도의 핵심 특징으로 판단하고 동 제도를 게임시간선택제로 명명하게 된 것이다.
- ◇ ‘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가입 시)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는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게임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는 절차다.

-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규회원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나, 기존 회원 가입자라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그 이용에 제한이 없다.
 - 이 제도 시행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고자 하는 게임정보가 부모에게 통보되어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게임이용 전) 게임물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부모는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게임회사의 포털을 방문하여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 앞으로는 지나친 게임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부모와 의논하여 게임시간을 정하는 건강한 가정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③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 게임에 접속한 후 1시간이 지나면 현재까지 이용한 게임이용시간과 함께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 경과시간 표시로 지나친 게임 몰입을 막고 계획된 다른 생활을 이어 할 수 있게 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게임이용 후)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하도록 했다.

- 고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와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이때 부모는 본인이 설정한 대로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이는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 정보를 다신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나, i)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ii)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iii)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 동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 구매 및 운영 등에 게임별로 많은 비용(5 ~ 15억원 추정)이 소요되어 중소기업까지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등의 소기업에는 시장 진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 개의 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 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를 기준으로 넥슨, NHN 등 14개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전담반은 게임별, 사업자별 제도이행 현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 제도 안내 등을 맡게 된다. 그리고 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 이행상황 점검은 7월부터 수시로 이어질 예정이며, 점검결과는 매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 관계법령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한편, 이 제도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및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에 대해서는 게임시간선택제 이용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도 청소년의 여가 문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화·체육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언론사와 공동으로 대국민 ‘1인 2기(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동 캠페인은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1가지, 스포츠 종목 중 1가지 이상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12년도 주 5일 수업제 전면 자율도입 등을 계기로,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가족단위의 방과 후 및 주말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한 바 있으며, 앞으로 '1인 2기(技)' 캠페인을 통해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직장 내 문화체육 동호회 활성화 등 기업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1 2012런던올림픽 문화축제 ‘오색찬란(All Eyes on Korea)’

- 한류, 올림픽 전후 100일간(6. 1~ 9. 9) 오색찬란하게 빛나다 -

-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2012년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전후100일간[6. 1.(금) ~ 9. 9.(일)]문화 강국의 국가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전통적인 오방색과 세계의 화합·결속을 의미하는 올림픽의 오륜기를 연계하여 ‘오색찬란, (영문명: All Eyes on Korea)’이라는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 ◇ ‘오색찬란(五色燦爛)’이란 예로부터 여러 가지 빛깔이 한데 어울려 아름답게 빛남을 뜻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과 같이 동 축제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색채가 한데 어울려 아름답게 빛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 아래 다양한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한국문화(K-Culture)를 전방위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 한류를 한국대중가요(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에 국한하지 않고 미술 전시, 문학, 클래식·퓨전 국악 공연 등의 한국 순수예술(K-Arts), 패션쇼와 한식, 한국영화(K-Film), 댄스 등의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할 것이다. 한류는 이른바 3.0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 이를 통해 한류를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 그 자체를 좋아하는 차원으로 승화하여 한류의 외연을 확대하고 그 확산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 ◇ 이번 축제는 그간의 해외 문화교류 행사가 일회성으로 한국인끼리의 행사로 그쳤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런던을 방문하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우리 문화를 홍보하고자 준비되었다.
-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영한국문화원을 통해 수년간 구축해온 현지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유럽 최대의 문화예술지구인사우스뱅크센터(Southbank centre), 세계 최대 장식미술 및 디자인 전문 박물관인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V&A) 등과의 공동 협력으로 진행한다.
- 특히 미술 전시와 공연 등은 사우스뱅크 센터가 자신들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한국문화예술인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프로그램별로현지 수요를 반영하여 현지 문화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 ◇ ‘오색찬란’은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역동성을 조화시킨 미술, 공연, 영화, 패션쇼, 한식 등 각 분야별 콘텐츠를 엄선하여 런던 시내 사방(템스강변, 런던의 동, 서, 남, 북 등)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미술 전시는 사우스뱅크센터 내헤이워드 갤러리(Hayward Gallery ;관장 랄프 루골프)에서유럽에서 선호가 높은 설치미술가인 김범, 이불, 최정화작가 등을 선정하여 마련하였으며,
- 공연의 경우 7. 30.(월)이자람 판소리 <사천가>, 7. 23.(월)비빙<이면공작>,7. 28.(토)공명,7. 29.(일)바람 꽃<한국음악 앙상블> 등의 퓨전국악공연과 함께 7. 31.(월)에는 조수미,

사라장과 런던필하모니라 오케스트라의 협연 무대 등을 마련하였다.

- 특히 7월 30일(월)에는 크리스티앙 디오르, 장 폴 고티에 등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의 패션쇼가 개최된 빅토리아 앤 앨버트(V&A) 박물관 라파엘 갤러리에서 단청, 전통 조각보를 활용한 ‘이상봉 패션쇼’와 세프 ‘레오 강’, ‘김소희’의 한식 시연 및 만찬이 개최된다.
- 이 외에도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 〈한국영화의 밤 12 감독전〉 등의 영화행사, 〈오색찬란 한국문화 열린 강연회〉, 〈2012 템스 축제 참가〉등의 다양한 콘텐츠의 행사가 준비되었다.

◇ 한국은 해방 직후인 1948년 처음으로 ‘KOREA’라는 이름으로 제14회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였다. 64년 만에 다시 런던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다.

- 이번 런던 올림픽은 64년 전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줄 수 있는 국가’로 변화된 한국과 한국문화의 높아진 위상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런던 올림픽을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오색찬란’이라는 문화축제로 연결하여 격상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왕의 경영

A large, ornate wooden cabinet with multiple drawers and doors, featuring intricate carvings and a decorative top. The cabinet is made of dark wood and has a symmetrical design with a central panel and side panels. The top is decorated with a carved pediment and two golden finials. The front of the cabinet has several drawers and doors, some with decorative panels. The overall style is classical and elegant.

김영민 2003

[illegible]

44

- 130 -

이 책은 트위터의 대화를 엮은 것으로, 자기관리에서 공부, 복지 등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까지 세세한 고민들에 대한 해법과 방향을 치열하게 주고받는다. 세종과 정조의 대화는 모두 실제 어록과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기록의 역사적 맥락과 사실 관계를 오해하지 않도록 주석에 원문과 번역문을 정리했다.

따라서 주석 자체만으로도 원전을 즐길 수 있으며 정조와 세종이 남긴 말들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조선을 대표하는 개혁군주 세종과 정조의 만남을 통해 지도자의 철학과 사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복소물리에 한마디!

이 책은 2010년 8월부터 운영된 세종과 정조의 트위터 가상계정에서 시작하여 2012년 1월부터 주간 《이코노미스트》에 연재한 원고를 최종적으로 보완하여 엮은 것이다. 저자의 기발한 상상으로 이 책에서 최초로 세종과 정조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세종과 정조를 온전히 복원해내고자 했으며, ‘업적’에 치중된 설명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고, 이루고자 했던 바’를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책 속으로

정조 ‘생생지락.’ 백성들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 참으로 감명 깊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길은 백성에게 있으니, 임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돌보고 지켜주어, 백성들이 각자의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세종 그래, 우리가 펼치는 정치는 곧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너의 가슴 속에는 오로지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담도록 해라.”

- 정치

정조 “큰 정치를 위해서는 적체된 인사人事를 소통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나이다. 해당 업무에 뛰어난 인재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한 사람에게 계속 같은 임무를 맡기다 보면,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지 못한 채로 사장되고, 그 임무를 맡길 만한 다른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생각됩니다.” 황희가 불후의 명재상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뛰어난 신하들이 재상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지 않았사옵니까.

세종 너의 말이 참으로 ?다. 내가 반성할 부분이다. 과인이 김종서가 북방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함길도와 관련된 업무는 그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는데, 적절한 시기마다 인사 적체를 해소해주되 해당 업무의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잘 전달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완해주면 될 것 같구나. - **인재**

출판사 서평

조선을 대표하는 위대한 두 성군의 대화가 최초로 이루어지다! 조선의 두 개혁 군주, 세종과 정조가 용안(龍顏)을 맞대고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논하다 『왕의 경영 - 수신에서 치국까지, 정조가 묻고 세종이 답하다』는 2010년 8월부터 운영된 세종과 정조의 트위터 가상계정에서 시작하여 2012년 1월부터 주간 「이코노미스트」에 연재한 원고를 최종적으로 보완하여 엮은 책이다.

1418년에 즉위한 세종과 1776년에 즉위한 정조는 350여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둔, 만난 적도 없는 까마득히 먼 할아버지와 손자다. 하지만 저자의....

조선을 대표하는 위대한 두 성군의 대화가 최초로 이루어지다!
조선의 두 개혁 군주, 세종과 정조가 용안(龍顏)을 맞대고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논하다

『**왕의 경영 - 수신에서 치국까지, 정조가 묻고 세종이 답하다**』는 저자의 기발한 상상으로 오늘날, 최초로 세종과 정조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들은 수신에서 치국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주며, 질책도 서슴지 않는다.

이 책은 학문에 뜻을 품고 정진한 젊은 정치철학자 김준태의 첫 책이다.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대부분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세종과 정조를 온전히 복원해 내고 싶었던 저자의 소망을 충실히 반영했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가 세종과 정조의 ‘업적’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추구하고, 이루고자 했던 바’를 좇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종과 정조라는 두 찬란한 별을 앞으로 나아갈 등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이다. 조선을 대표하는 개혁 군주 세종과 정조의 만남은 오늘날 우리에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철학과 사상이 어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1. 정조가 묻고 세종이 답하는 대화 형식

두 임금의 대화는 우연에서 출발했다. 저자는 『세종실록』과

『정조실록』,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를 읽으면서 주요 대목을 정리하고 있던 중,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세종의 시대를 그리워하곤 했던 정조 이기에 저자는 만약 이 두 임금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떨까 상상했고 이를 트위터에서 실현했다.

〈이산〉이나 〈뿌리 깊은 나무〉 등 드라마로도 익숙한 이 두 조선 왕에게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졌고 두 임금의 팔로워 수는 2만 오천 명이 넘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지진이 일어났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음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나, 재난을 당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라. (세종13.5.2/19.12.12)”라는 세종대왕의 멘션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화제를 몰며 리트윗 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좋은 말씀들이 수많은 트위터리안에게 리트윗되었다. 저자의 이 기발한 시도로 세종과 정조는 21세기의 사람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시작했다.

2. 정교한 주석과 풍부한 해설로 읽는 조선의 통치 철학

이 책에서 이루어진 세종과 정조의 대화는 모두 실제 어록과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포용(包容) 장에서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사건건 정조의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신하들 때문에 화가 난 정조가 세종에게 조언을 구하자 세종은 임금이 신하를 다그치면 신하들이 진언(進言)을 할 통로를 막아버린다면 정조를 꾸짖는 것이다.

이는 정조 24년(1800년) 5월 30일, 오회연교(五晦筵敎, 정조가 연석筵蓆에서 내린 교시)를 발표한 후 신하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신하 심환지(1730~1802)를 불러놓고 걱정을 토로한 기록/세종 앞에서 “전하께서 명철하지 못하시니 어찌 신이 조정에서 벼슬을 하겠습니까.” 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고약해(1377~1443)를 용서한 사건/사사건건 세종의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던 신하 허조(1369~1439)를 감싼 세종실록의 기록이 교차하며 어우러진다.

저자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전 기록을 창작을 가미하여 엮은 후 인용된 부분을 따로 표기했다. 또 독자들이 이 기록의 역사적 맥락과 사실 관계를 오해하지 않도록 주석에 원문과 번역문을 정리했다. 그래서 독자들은 주석 자체만으로도 원전을 즐길 수 있으며 정조와 세종이 남긴 말씀들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세종은 표현의 자유를 신하들은 물론이고(93p) 백성에게도 열어 두었으며(80p) 공법을 재정비할 때도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28p), 출산을 앞둔 여노비들이 걱정되어 백일간의 휴가를 준 후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는 등(119p) 지금 돌이켜봐도 매우 선진적인 복지를 실현하였다.

저자는 시간과 공간,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옷만 갈아입었을 뿐 인간의 본질과 감정의 흐름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3.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치를 행함이다

『세종실록』 3권, 1년 1월 6일의 기록을 보면 “임금이라는 자가 백성들이 굶어죽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참으로 못할 짓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소진 되어서 창고를 열어 진흙미를 나누어준다고 해도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백성이 있을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굶주리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조세를 면제해주지 않는다면, 대체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해줄 일이 또 무엇이 있단 말인가.” (爲人君者 聞民且飢死 尚徵租稅 誠所不忍 況今舊穀已盡 開倉賑濟 猶恐不及 反責租稅於飢民乎 且遣監察 視民饑饉 而不?租稅 復有何事爲民實惠乎)라는 세종대왕의 말씀을 볼 수 있다.

세종과 정조는 타고난 군주였고 당대에 성인으로 추앙받던 왕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학문에 밝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무를 살피느라 몸이 쇠약해지는 것도 몰랐다. 두 임금은 하늘이 내려준 임금이라는 자리에 사명감이 깊었고 지도자의 도덕성과 자기반성을 언제나 강조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백성을 사랑했다. 그들을 치열하게 몰고 간 것은 오로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모범이 되기 위한 마음이었다. 두 임금은 이 책에서 자기관리, 공부, 복지 등 나를 다스리는 것을 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까지 세세한 고민들에 대한 해법과 방향을 치열하게 주고받는다.

4. 조선의 두 성군에게 인생의 길을 묻은 젊은 학자

저자는 2003년 정조의 정치철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이래, 10년 동안 『세종실록』과 『정조실록』 『홍재전서』를 거듭 읽었다.

리더십에 관련한 책들이 외국 인물에 국한되어 있고 『한국정치사상사』의 목차가 개화기부터 시작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 이 젊은 학자는 이 의문이 계기가 되어 이제껏 리더십과 철학 공부를 해왔다고 한다.

특히 저자는 역사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 연구소 홈페이지 상에 글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 책은 대중과 원활히 소통하는 새로운 역사 인문서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MEMO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12년 7월 25일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042) 606-5021 / 팩 스 (042) 606-5029